

대전지방법원 2020. 12. 23 선고 2020가단1563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2. 16.

판결 선고 2020. 12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7. 1.부터 2020. 12. 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김양규

별지